

보도자료



9. 17. (수) 브리핑 시부터 보도 가능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,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,			
7874	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2부, 상호저축은행중앙회			
책 임 자	윤영은 과장(2156-9850)	담 당 자	박진애 사무관(2156-9853)	
	최건호 국장(3145-6770)		윤대광 팀장(3145-6775)	
	이흥섭 부장(758-0551)		강호성 팀장(758-0570)	
	한대호 상무(397-8602)		이경연 부장(397-8620)	
배 포 일	'14. 9. 17.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11매	
에 포 월	14. 9. 17.	็็พエテベ	공 보 실(3145-5789~92)	

제 목: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

│ 추진 배경

- □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**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**으로서 **새로운 도약**이 필요한 시점
 - 대규모 구조조정 마무리 및 누적 부실 정리('10년 이후 PF대출 80% 이상 정리) 등으로 **그간의 불안 요인은 대부분 해소**되었으나,
 - 과도한 부동산 PF채권 투자 등 본업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했던 탓에 **대고객 신뢰** 및 **지역 영업기반이 상당부분 잠식**된 상황
 - 반면, 현장 위주의 관계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 은행*의 경우 지속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경영실적 시현
 - * 18개 저축은행은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연속 흑자 기록
- □ 따라서 정부와 업계는 관계형 영업과 같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,
 - **공개 세미나** 개최('14.3.20.) 및 **유관기관·업계 공동 T**/F* 운영 등 「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」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옴
 - * 참여기관: 금융위, 금감원, 예보, 금융연구원, 저축은행중앙회,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
- □ 이를 토대로, 업계·학계를 중심으로 **우선적으로 추진**할 **필요성이 제기**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**금번 방안**을 마련하게 되었음

Ⅲ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

- ◇ 정부가 관계형 모델을 특정하는 경우 다양성·창의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규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
 - ⇒ 업계가 **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**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·정착시켜 나가도록 함
- ◇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

1.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 마련

가. 기본 역량 강화

- □ 개별저축은행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성공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워크샵,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모범사례*를 공유(참고1)
 - *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 조사 결과
 - (i) 정성적 정보 활용, 방문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**현장중심 영업**
 - (ii) 연중 소득흐름 등을 감안한 고객별 **맞춤형 상품** 개발
 - (iii) 지역네트워크 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구축
 - (iv) 문화재단, 장학 사업 등 **사회 공헌 활동** 수행
- □ 여신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(CSS, Credit Scoring System) 개선
 - (현행) CSS를 갖추지 않고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12개사나 있고, CSS를 구축한 저축은행도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
 - (개선) CSS를 활용하는 저축은행 수를 64개사*에서 76개사로 확대** 하고, 부실예측력 제고 등 CSS 업그레이드 추진
 - * 표준CSS(저축은행중앙회가 제공하는 공동 신용평가 시스템) 이용 38개사, 자체 CSS 이용 26개사 ** 총 87개 저축은행중 신용대출 취급하지 않는 11개 저축은행 제외
- □ 개별 저축은행이 **경영상황**에 대한 **자체 진단** 및 **개선방안**을 마련할 수 있도록 **종합적 경영 통계** 정보 제공
 - (현행)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대응 능력 부족
 - (개선)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전체의 재무구조, 여신구조, 자산 건전성 현황 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

나.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 구축

- □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고객의 **상환** 부담을 **완화**하고, 중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·운영
 - (현행) 개인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제도(일시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) 운용
 - (개선) 일정요건^{*}을 갖춘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 등 '법인'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확대(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사항)
 - * 일정기간 이상(예 : 2년 이상) 거래,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신
- □ 중장기 고객 관계 형성을 위한 영업채널 구축 추진
 - (현행) 불특정 다수 대상, 일시적 관계에 기초한 대출모집인 위주의
 영업이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를 저해
 - (개선) 온라인 "대출직거래장터^{*}" 개설, 소상공인 유관단체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자금수요자와 저축은행과 원활한 연결 도모
 - * 고객정보 입력 → 이용 가능한 저축은행 및 상품 조회 → 대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연결

다.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

- □ 지역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("상품 선택지") 제공
- □ 저축은행 **체크카드 기능 확대(후불교통카드** 기능 탑재)
 - (현행)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, 후불교통 카드 등 생활에 밀접한 기능 부재로 사용실적이 미미

<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 현황(개, 억원) >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
취급은행	48	46	50	44	44	47
발급	32,057	27,456	36,250	41,442	26,285	42,396
사용실적	56.3	163.9	281.3	465.8	432.1	360.1

- (개선) 후불교통카드 기능 등이 가능하도록 30만원 한도* 내 소액 결제 기능 탑재(BC카드와의 제휴를 통한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)
 - * **후불교통카드** 등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만 가능하도록 하고, 지나치게 높은 한도 부여시 신용카드와 기능 차이가 적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도 부여
- ⇒ 금감원 상품 약관 심사 후 취급('15년 1/4분기중)
- ※ 중장기적으로는 체크카드 고객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없는 **후불교통 카드 기능** 탑재 방안 별도 검토
- □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 : 카드 결제일과 결제대금 입금일 차이 등으로 자금 수요 발생시 인근 저축은행이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
 - (현행) VAN대리점 등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카드매출정보를 활용하여 즉시결제서비스라는 형태의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파악
 - (개선)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, 또는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 활성화
- □ 그간 관련법령상 취급이 허용되어 있었으나 취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·신용카드 판매 활성화
 - (현행) 방카슈랑스·신용카드 판매 저축은행이 1~2개사에 불과
 - (개선)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사, 카드사간 업무제휴를 통해 금년중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* 개시
 - * 제휴카드사 카드를 저축은행에서 발급 →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

※ 할부금융 관련

-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('14.2월)하였으며 여전법 시행령 개정(입법예고 완료 후 규개위 심사 준비중)을 거쳐 '15년 상반기부터 취급 가능할 전망
- □ 정책금융상품 취급 확대를 통해 저축은행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
 - (현행) 지난 '13년 9월 발표한 발전방향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 공사의 보금자리론 취급중('14.6.17~)
 - (개선) 온렌딩(정책금융공사) 등 추가적인 정책금융상품도 취급

2. 제도개선 사항

가. 점포 설치 규제 완화

- □ (기본방향) 저축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성 제고^{*}를 위해 점포 설치 규제 완화
 - * 현재 **저축은행 지점수**는 전국에 297개로 **1개 시**(자치구 및 군 포함) **약 1.13개에 불과(신협**의 경우 **1개 시 당 6.35개(영업소 기준)**로 **저축은행의 약 5~6배** 수준)
 - 아울러, 점포 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·상호금융 등 타업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제고
- □ (현행) ①재무건전성, 증자요건*을 갖추어 ②금융위 인가를 받아 ③영업구역** 내에만 점포(지점·출장소·여신전문출장소) 설치 가능
 - * (재무건전성요건)BIS 비율 8% 이상, 고정이하 여신 비율 8% 이하 (증자요건) 특별시 지점설치시 120억원, 광역시 80억원 등
 - ** 6개 영업 구역: 서울, 인천·경기, 부산·경남, 대구·경북·강원, 광주·전라·제주, 대전·충청

< 저축은행 점포 기능, 규모 및 증자요건 비교 >

	기능(업무범위)	면적 및 인원	증자
지점	예금, 대출 등 모든 업무	제한없음	특별시 120억원, 광역시 80억원 등
출장소	예금, 대출 등 모든 업무	400m²이내, 10인 이내	지점의 50%
여신전문출장소	대출, 공과금수납	400m²이내, 10인 이내	지점의 12.5%

- □ (개선) ① 증자요건 완화, ② 인가제 → 신고제 전환, ③ 영업구역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 허용
- ①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는 유지하되, 출장소·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 배제(시행령 개정 사항)
- ②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설치 가능(법 개정 사항)
- ③ 현재 영업구역 외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영업구역외 여신 전문출장소 설치 허용(시행령 개정 사항)
- □ (중장기) 지점 설치 시에도 증자의무를 배제하고, 저축은행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

나. 충당금적립 기준(자산건전성 분류기준) 합리화

- □ (기본방향) 연체가 없고, 채무상환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
 -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로 **장기거래 고객에** 대해 **금리인하** 등 **인센 티브 부여**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
 - 아울러, **담보 위주의 "보신주의"적인 여신 관행을 "채무상환능력 평가"**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
- □ (현행)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요주의,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

<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차이>

자산건전성 분류 ("예시"위주로 운용)	정상	요주의	고정
대손충당금 적립	0.5%	2%	20%

-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입했던 차주에 대해서도 **대출금리 인상**, **만기도래 전 채권회수 관행** 야기
- □ (개선)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(대손충당금 적립 기준) 조정
 - * 가장 개선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던 다음 예시에 대해 기준 조정
 - ① **부실징후** (차입금 > 연간 매출액, 자본잠식, 3년간 당기순손실, 경영권 문제, 3개월 조업중단) : 요주의 분류
 - ②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: 고정 분류
 - ③ 폐업중인 기업: 고정 분류
 - ① 6억원(법상 개인 여신 한도)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예시 적용 시 예외 인정*
 - * 요주의 → 정상, 고정 → 요주의 분류 가능
 - ⇒ 저축은행이 차주의 정량적, 정성적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
 - * '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해설서(금감원)'를 통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했던 점도 감안
- ② 6억원을 초과하는 여신이라도 (i) 일정기간(2년 이상)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(ii)영업구역 내 여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예외 인정
- □ (중장기) 예시 위주의 건전성 분류기준(충당금 적립기준)을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전환

4. 향후 추진계획

추진 과제

조치사항

추진일정

① 업계 자율 추진 사항

- ① 유관기관 워크샵, 임직원 연수 등 모범사례 공유
- ② 신용평가시스템(CSS) 개선
- ③ 중앙회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
- ④ 자체 채무조정제도 확대
- 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 제휴
- ⑥ 대출직거래장터 개설 등
- ⑦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 확대
- ⑧ 소상공인 카드매출 관련 신용대출상품 개발
- ⑨ 다양한 금융상품 취급(방카슈랑스, 신용 카드 등)

방안 마련

방안 마련

방안 마련

중앙회 표준규정 개정

방안 마련

방안 마련

방안 마련

상품 개발

상품 취급

'14년下

'15년 ト

'15년 ト

'14년下

'14년下

'14년下

'15년 1분기

'15년1분기

'14년下

② 제도적 뒷받침 사항

- ① 점포설치 규제완화
- 지점설치 인가제 → 신고제로 전환
- (여신전문)출장소 설치시 증자의무 완화
- 영업구역외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
-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

상호저축은행법 개정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

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

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'15년上

'15년上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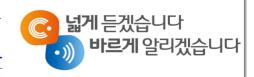
'15년上

'14년下

※ 붙임 : 핵심 Q&A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fsc.go.kr / http://www.fss.or.kr



참고1

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

* 출처 :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

1. 현장중심 · 지역 밀착형 영업 □ (정성적 정보) 직접 확인한 차주의 평판, 해당 지역 거주 기간, 가족환경, 사업성, 상환의지(성품) 등도 심사(A사·B사·C사) □ (현장중심) 대출모집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으며, 차주의 영업장 및 담보물 등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만 대출(A사·C사) □ (리스크 관리) 자체적으로 개별차주 여신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여 보수적으로 운용(B사) □ (방문서비스) 고객 요청시 사업장, 근무지 등에 저축은행 직원이 시간·장소 제한없이 방문하여 대출상담 등 서비스 제공(A사) □ (지속적인 관계유지) 핵심고객(거점고객)을 선정하여 정기방문 및 통화, 기념일 선물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(A사) ○ 이를 통해 핵심고객이 **다른 신규고객을 소개**(MGM: Member Get Member)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영업망 확장에 기여 2. 고객 특성별 맞춤형 상품 □ (하이브리드 대출) 일일상환대출을 통해 획득한 소상공인 등

- 차주의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**담보대출과 신용대출**을 **결합**(A사) □ (소규모 건축자금 대출) 준공에서 매각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자금 대출(A사) □ (개인택시대출) : 시중은행 개인택시 구매자금 대출(택시 담보)과 차별화하여, 택시 구매 후 기사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(A사)
- □ (漁民여신 연체관리) : 어종별 조업시기가 달라 소득이 연중 균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자납입 및 연체관리 시 취급 어종 등 고유 특성 고려(C사)

3.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구축 □ (지방자치단체) OO市와 "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" 협약 체결 → OO市가 이자 일부 지원(A사) ○ 또한, OO상공회의소와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기 및 우량 중소기업 업체 현황 등 정보 취득 □ (지역내 조합) 개인택시조합과 협의를 통해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시(B사) ○ 대출시 차주의 평판, 성실성, 상환의지, 생활력 등의 정보를 개인택시조합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부실 방지 □ (지역 네트워크 참여) 동창회, 지역모임 등 지역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업종·업체별 정보 수집(A사·B사·C사) ○ **인사 이동**시 지점별 직원을 통해 **기구축된 인적네트워크**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(A사·B사) 4. 사회공헌활동 □ (사회공헌 성격의 대출)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층 차주를 선별하여 (조달금리-1%)로 정착자금 제공(B사) □ (문화재단 설립) 전통 축제, 전통 탈춤 복원 사업 등 지역 문화

□ (지역 동호회 후원) 지역 내 조기축구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공헌과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 효과 도모(C사)

□ (장학사업) 장학재단 설립, 장학금 기탁 등 이익의 지역사회

환원(D사·E사)

사업 후원,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 지역민 문화수요 충족(A사)

참고2

관계형금융 해외사례

* 출처 :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및 세미나 자료

1. 일본 저축은행 :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따라 발달

- □ 일본은 '03년부터 관계형금융(Relationship Banking) 활성화 추진
 - (목적) 버블 붕괴 이후 발생한 지역금융기관*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,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
 - * 지방은행, 제2지방은행(상호저축은행과 유사한 설립배경), 신용금고, 신용조합 등
 - (중소기업금융) 거래기업에 대해 "라이프사이클"에 상응하는 全 단계에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도록 역량 강화
 - 지역정보 수집, 지역사회 기여정보 등 **지역밀착형 금융 추진** 계획 및 실적 공개
 - 검사 매뉴얼에 자산건전성 분류 시 기업의 재무 상황 외에 기술력, 판매력, 성장성 등을 감안하도록 명시
 - (건전성 강화) 신용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강화
- □ **컨설팅 지원**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**지역사회 신뢰 구축**을 통해 메가뱅크(도시은행)와 경쟁 가능

2. 독일 저축은행 그룹 : 역사적, 지역적 특징을 기반으로 정착

- □ 정부 주도하의 발전이 아니라 **개별 금융기관이 장기간**에 걸쳐 **지역 고객과 거래관계**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착
 - (공공성) 주립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소액저축 고객 이익 증진 등에 관심
 - (컨설팅서비스)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
 경영 전반에 자문,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
 - (지역 중심 영업)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어 해당지역 중소 기업 고객에 집중할 수 있고,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□ 저축은행 그룹,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
 - (Sparkasse저축은행그룹) 거래 중소기업과의 **장기 거래**와 **상호신뢰**에 기반을 둔 방법으로 정보 수집
 - **단기적인 유동성 위기**에 직면하는 경우 기업의 역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(구조적인 문제인 경우 대출 회수)
 - 경영원칙 : ① **공익**에 대한 헌신과 지역에 집중 ② **지역주의** 원칙과 신뢰를 중시 ③ 전국적인 저축은행 그룹과 **협업**
 - (협동조합은행) 영업과 심사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담당자가 RM(Relationship Manager)과 심사역의 기능을 담당
 - 거래기업별 은행 대출 담당자는 10년 이상 또는 퇴직까지 유지되는 등 담당자 교체는 지양

3. 미국 지역 은행 :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활성화

- □ **미국 지역 은행**은 **고객과 오랜 관계**를 형성하는 **RM**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
 - RM은 최소 월 1회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·우편을 이용해 매일 연락을 취하는 등 관계형성을 통해 고객 정보 수집
 -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에 거래처 업황 악화를 인지하고 적절한 컨설팅 또는 채권보전 조치 등 가능
 - 조직 분권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,
 RM을 통한 영업과 심사의 일체화
 - 다만, RM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 대출승인 가능 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,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